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4가합1487 청구이의
원 고 주식회사 A
전남 무안군
대표이사 송OO
피 고 이OO (62-1)
광주 광산구
변 론 종 결 2014. 4. 18.
판 결 선 고 2014. 5. 2.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1가합14383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1. 2. 9. 원고와 원고 소유인 전남 무안군 청계면 상마리 299 외 2필지 지상 4개동 공장시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대금 3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다만, B은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관계로 원고의 양해 하에 소외 유한회사 C(2011. 3. 18. 소외 D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고 해산, 이하 유한회사 C과 D 주식회사를 통틀어 'D'이라 한다)의 면허를 대여받아 D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원고를 하수급인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가 B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하여 공사대금을 6억 7,000만 원으로 한 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2011. 6. 29.자로 원고와 D 사이에 공사대금을 6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형식적인 계약서(이하 '이 사건 통정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B은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1. 6. 29. 원고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 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B은 2011. 9. 19.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같은 날 원고와 나머지 공사대금 2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역시 원고로부터 직접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라. 대한민국은 2011. 10. 13. D이 체납한 합계 185,283,240원의 국세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통정계약에 따라 D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채무 중 위 185,283,24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마. 이에 B은 원고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1가합14383호로 원고에게는 미지급 공사대금 2억 3,000만 원(청구취지에는 2억 3,800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주장은 2억 3,000만 원으로 하였다)의 지급을 구하고, 대한민국에게는 이 사건 통정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 소'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바. 이 사건 전 소에서 위 법원은 2013. 1. 31. 원고에 대한 청구는 위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원고의 상계 등으로 146,606,947원만 남아있음을 이유로 위 146,606,9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만 인용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통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나,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통정계약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2. 21. 확정되었다.

사. B은 2013.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전 소에서 인정된 위 146,606,947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를 원고에게 발송하여, 그 통지가 2013. 3. 14.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피고는 2013. 3. 26.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전 소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2014. 2. 20.경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 등을 압류하였다.

아. 한편 대한민국은 2013. 3. 11.경 이 사건 압류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전 소 판결금 중 원금 146,606,947원을 지급받아 D의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 11.경 우선채권자인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인 144,606,947원을 지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B 또는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 소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B과 원고가 2011. 6. 29. 및 2011. 9. 19.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직불합의를 함으로써, D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부존재하거나 그 무렵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이고, 원고는 대한민국에게 144,606,947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원고는 D의 압류채권자인 대한민국에게 144,606,947원을 지급함으로써 D의 채권을 변제한 것에 불과하고, B의 채권을 변제한 것은 아니므로 그 변제의 효과를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는 대한민국에 대한 변제로 B이나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압류의 무효 여부

가)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급인이 도급인과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의 합의하에 계약상의 수급인 명의를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 표시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사를 시행하였다면, 위 사업자와 도급인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 의한 도급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위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가압류 후에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어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의해, 도급인은 가압류권자에게 그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도급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수급인이 실제 공사를 이행하였다면 그 공사를 계약명의자인 위 사업자가 이행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도급인은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때 수급인 명의를 허위로 표시하면서 동시에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줄여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가압류 전에 수급인이나 위 사업자에게 지급되어 소멸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중 위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45855 판결 참조).

나) 위 판례의 법리는 대한민국이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이 사건 압류를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통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는 이 사건 통정계약에 의한 D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압류로서 유효하다.

다) 그리고 원고와 B이 2011. 6. 29. 및 2011. 9. 19.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직불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직불합의는 이 사건 통정계약이 원고와 B, D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위 당사자들 사이에 유효한 이 사건 본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통정계약에 의한 D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압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채권 변제 여부

가) 대한민국이 D의 압류채권자로서 원고로부터 144,606,947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채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피압류채권을 행사하므로, 원고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D, B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원고의 위 채무 변제는 민법 제470조에 의한 이 사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통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원고와 D, B 사이에서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통정계약에 의한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 사건 본 계약에 따라 B에 대한 채무를 부담할 뿐이다.

(2) 원고와 D, B 사이에 있어서 이 사건 통정계약에 따른 D의 채권과 B의 이 사건 채권은 동일한 채권이므로, 원고가 D의 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이는 곧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는 것과 동일하다.

(3) 비록 대한민국은 D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원고와 D, B 사이에 있어서는 D의 채권과 이 사건 채권이 동일하므로, 대한민국은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이 경우에 대한민국은 원고와 B(B의 승계인인 피고 포함) 사이에서는 '이 사건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전 소 판결이 확정됨

으로써 이 사건 통정계약의 무효로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압류에 기한 대한민국의 추심을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변제는 이 사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선의, 무과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144,606,947원을 지급한 2013. 3. 11.경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전 소 판결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정수

 판사 김선숙

 판사 전경옥